

미암면 종합감사 결과

I. 감사개요

1. 감사배경 및 목적

-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·개선�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
- 수입, 지출,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
-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·누락·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

2. 감사대상 및 범위

- 감사대상 : 미암면
- 감사기간 : 2019. 03. 05. ~ 2019. 03. 08. (4일간)
- 대상기간 : 2017. 02. 21. ~ 2019. 03. 04. (2개년)
- 감사자 : 기획감사실장 외 6인

3. 감사중점사항

- 공사·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
- 기획, 총무행정, 문화·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
- 농정업무, 지역경제 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
-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
-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
-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
-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

4. 주요위반사항 요약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일반행정 분야	공공기록물 문서고 보존관리 미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암면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(서고 관리책임자 지정)에 의거 보존 문서를 보관하는 문서고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, 문서고에 입·출고 기록물의 입·출고가 통제되어야 함에도 입·출고의 통제대장을 비치하지 않았으며, 또한, 군 총무과 「2018년 기록물 평가, 폐기 계획 통보 및 처리과 의견 조회 회신 요청」 공문(총무과-2586호)에 의거 보존 서고내 보관중인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이 있음에도 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, 제29조, 동법 시행 규칙 제35조】
세출분야	이장 월정수당 지급일 지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암면에서는 2017. 3. ~ 2019. 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이장 월정수당 지급을 3일~ 16일 까지 지연 지급하여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【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】
	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암면에서는 2017년, 2018년 공사 2건에 대해 수입인지 40,000원을 미징구하였고,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면서 2017년, 2018년 공사 2건에 대해 175,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과소 징구한 사실이 있음 【인지세법 제3조 및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】
세무분야	주민세(재산분) 과세자료 관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암군사무분장규정 등에 의거 읍·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, 미납부한 3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조사하지 않고, 군에 부과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민세(재산분) 7건 3,878,410원을 누락하여 과세대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【영암군사무분장규정 및 재무과-17356(2018.7.3.)호】

분야별	제 목	주요 위반사항
세무분야	취득세(이륜차) 신고·납부 미확인 및 과세자료 누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하면 [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(상속의 경우 6개월)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]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, 「영암군사무분장규정」 등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면 신고·납부 안내하고, 기한내에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군에 제출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,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【지방세법 제20조】
사회복지 분야	의사무능력(미약)자 급여관리자의 부당사용에 대한 책임고지 누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18년 하반기 급여관리실태 점검 결과 급여관리 대상자인 ███의 경우 급여 관리자(●●●)가 수급자의 복지급여액 일부를 부당 인출 사용 후 2개월 후 동일 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, 미암면에서는 급여관리자에게 복지급여액 부당 사용 관리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정확한 고지를 한 사실이 없음 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(보건복지부)】
	사망자에 대한 장애인등록증(복지 카드) 회수 및 폐기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미암면에서는 2017~2019년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망으로 확인된 장애인 7명 중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6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 또는 반환통보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음 【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】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농업분야	2018년 가축 통계 조사 실시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미암면에서는 2018년 상·하반기 가축통계 조사시 마을 담당 공무원 입회 없이 마을 이장 협조 요청으로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가축통계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【농업통계조사규칙 및 실시요령】
	농지임대차계약 업무처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미암면에서는 농지 임대차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, 2018년 4필지 3,079㎡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농지 임대차 계약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【농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】
건설도시 분야	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준공처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미암면에서는 『미아 기동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』를 시행 및 준공하면서 본 설계내역에 사급자재인 용접철망 #8-100×100 58m²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설계되었으나 감독자 및 시공사는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 되었음 ● 따라서, 공사감독은 준공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,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 금액대로 집행하여 제작비를 포함한 총 금액 168천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 하였음 【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】
	소규모 농로유지보수 (사리부설) 사업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미암면에서는 『미암면 하천제방 정비』 외 2건의 사리부설공사를 시행 하면서 설계시 보조기층의 단가 및 골재원이 각각 상이하고 비교 견적 없이 추진하였으며, 상기 3개 현장의 노면상태가 농기계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(착공전 사진 확인)구간에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 한 사실이 있음 【전라남도 설계기준,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】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건설도시 분야	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사전승인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미암면에서는 상기 『미암 청현마을 배수로 설치공사』 외 6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승인 없이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1인을 2개 현장 이상에 중복 배치하는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【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,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,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】